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0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94호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전결권자의 “담당”을 “계장”으로 하고 건축과 사무전결 처리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 사무의 전결사항

부서명	일련 번호	사무내용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계장				
건축과	18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협의포함) 등 ※ 증축의 경우 증축분만 적용						
		가. 4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나. 5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이상~3,0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다. 6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라. 건축지도원 임명	기안		○			
		마. 건축공사 관련자 변경 신고수리	기안	○				
		바.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및 사용승인	기안	○				
		사. 건축공사로 인한 중요민원처리(다수관련민원)	기안				○	
		아. 건축공사로 인한 일반 민원처리	기안		○			
		자. 건축민원1회 방문협의	기안	○				

군산시임해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동선*



2015년 10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95호

군산시임해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군산시임해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10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96호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행복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보고 안건에 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실행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주관 과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임무등)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제안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회의내용을 적고 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심의 및 의결 결과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

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외에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소 속 (추천단체)	*기관단체명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생존분과위원회 ()		보호분과위원회 ()	
	발달분과위원회 ()		참여분과위원회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를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야 (제5조 관련)

분과	업 무 분 야
생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의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 생명보호, 돌봄, 보육, 건강, 급식, 보건의료,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 등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 학대와 방임 예방, 차별금지, 학교 폭력 예방, 약물과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안전실습, 안전환경, 아동보호지원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 교육,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개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놀이와 여가 활동 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시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 아동의견 수렴 창구 운영, 시정참여 및 활동 지원,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등

군산시 공고 제2015-1505호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자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선설치 허가대상자 추가

- 우선 설치 허가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전문개정 및 신설
(안 제1조, 제4조, 제5조)

다. 설치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개정

- 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 개정에 따른 우선순위 내용 추가 및 변경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5. 10. 6 ~ 10. 26(21일간)

4. 의견제출

- 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10.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에 FAX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ksss5789@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454-3172, 팩스 454-3139)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관련법규

- 가. 「노인복지법」 제25조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 3
- 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의 청사
 2.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산시 해당시설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시보 또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과 허가·계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6.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군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 매점
- 자동판매기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구 분 (해당란√ 표시)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및 유족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기 타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대상자		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	설치계약 대상공공 시설명									
	내 용	매점	개소(m ²)							
		자동판매기	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우선허가 증명서류 1부.

군산시 공고 제2015 - 1509호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2.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사항 이행 및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일부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항 조문정리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점용료의 감면(안 제6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안 제8-2조)

다.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
 물의 종류에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별표1·2)**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60)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장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건설과(전화 : 063-454-3560, FAX : 063-452-8172)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고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4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로 한다.

제6조 중 “ ④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을 신설한다.

제7조 중 “도로법 제84조”을 “「도로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점용료의 분할납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10조 중 “도로법 제38조”을 “「도로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1·2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01></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 6 6 조 에 ----- ----- ----- ----- ----- -----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 ----- ----- ----- ----- ----- ----- ----- -----</p>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③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도로법 시
 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
 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
 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
 로 2 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
 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2.
 05.01>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③ 별표 1
 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도로법
 시 행 령」 제 6 9 조 제 1 항 의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 6 6 조 제 2 항 의

야 한다. <개정 2012.05.01>

제8조의2<신설>

제8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연
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
야 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
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
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
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
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
에 따른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
로법」 제72조의

	----- ----- -----
--	-------------------------

[별표 1]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 공중 전화, 송전 탑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 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 하수도 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 가스관, 송 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1,650
		지름 0.8m초과 1.0m이하			2,050
		지름 1.0m초과 2.0m이하			3,1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5,200
		지름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6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1,2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8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2,500
		지름 0.8m초과 1.0m이하			3,100
		지름 1.0m초과 2.0m이하			4,6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7,750
		지름 3.0m초과			10,850
3. 주유소· 주 차장·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 물터미널· 자동 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적치 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 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 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제1 호에 따라 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 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광고탑·광 고판·간판(돌 출간판을 제 외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 판·간판(돌 출간판을 제 외한다)	일시설치한 것 (1개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으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 치	도로 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의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4.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

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 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등이 포함된다.

6. 위 표의 제2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 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기본산정방식〉

계산방법 : i)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한 후
ii) 이와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계 산 식 : i)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A)은

$$A(\text{cm}^2) = a \times b$$

ii) 위 직사각형과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D)는

$$D(\text{cm}) = 2 \times \sqrt{A(\text{cm}^2)} \text{ 로 계산하며 소숫점이하 버린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관계법령 발췌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

- 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 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가타)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군산시 공고 제2015 - 1510호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산시도로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60)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장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건설과(전화 : 063-454-3560, FAX : 063-452-8172)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하

폐지조례“안”

군산시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511호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산시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60)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장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건설과(전화 : 063-454-3560, FAX : 063-452-8172)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칙 폐지“안”

군산시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514호

공 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군 산 시 장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 및 정책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시 주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명시(안 제1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2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3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안 제5조)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과
(전화 063-454-2683, 팩스 454-2659)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 063-454-2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와 지역 내 자동차·기계 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발굴하는 포럼 사업
2.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517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청에 부응하여 상위법에 맞지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7호 예치금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제10조(예치금) 조항 삭제(안 제10조)

1.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063-454-2702, FAX 454-26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 063-454-27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 반환은 반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예치금"이란 월 사용료 등 12개월분을 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삭제></p>
<p>제10조(예치금) ① <u>군산시장은 사용자로서 예치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예치금은 사용면적을 감안하여 군산시장이 결정 고시한다.</u></p> <p>③ <u>시장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예치금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7조에 배상책임 및 제16조 및 제18조의 부담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u></p>	<p>제10조 <삭제></p>

군산시 공고 제 2015 - 1552호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으로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근거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

나.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및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각 협의체(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세부조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인원 확대 (30명 이하 → 40명 이하)

-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참여범주 확대
-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
- 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 구성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로 성별 고려 구성
 - ※ 읍·면·동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기능 :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및 지역보호 체계 구축·운영 등
- 마. 각 협의체 회의 횟수 조항 신설(안 제15조)
- 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변경(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월 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주민생활지원과(전화063-454-3073, 팩스 063-454-3059,
 전자우편 lkh4122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계
 (전화 063-454-3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사항 및 다음 각 호를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1항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9조(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① 시장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시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7조제3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⑤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5-12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전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0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4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전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사업
 - 나. 명 칭 : 전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청사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인가	최초결정일
			면적(m ²)	면적(m ²)	
공공청사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45번지	8,079	8,079	전북고2015-17 1 (2015.08.07)

- 규 모 : 건축면적 1,402.58m², 건축연면적 2,732.06m²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8
 - 나. 성 명 : 전북지방경찰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개정면 아동리	745	대	8,209	8,079	국(경찰청)	-	-	-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5 - 12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

군 산 시 장

- 1. 사업명 : 군산 대명동아파트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	(주)휴먼타워	광신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석동	김인진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길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91(오선동)	

- 3. 시공사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	제이앤이건설(주)	(주)양일건설	
대표자	최경애	양행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126 비101호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3길 3-26, 3층(연향동)	

- 4. 사업내용 : 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5-19번지
- 나. 주택구분 : 민간분양
- 나. 대지면적 : 12,960.9000㎡
- 다. 건축면적 : 2,817.9474㎡
- 라. 연면적 : 63,180.9752㎡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25~29층, 480세대

59형	59.9863㎡	110세대
69형	69.9281㎡	170세대

84 A형	84.9854m ²	77세대
84 B형	84.9884m ²	24세대
84 C형	84.9974m ²	53세대
84 D형	84.9318m ²	46세대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업비 : 82,346,141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03. 01~ 2016. 02. 28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년 10월 2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15-12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10. 1

군산시장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120번지		
성명(법인명)	한국가스공사		
하 천 명 칭	미제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전북 군산시 미룡동 241-12번지외 7필지 군산 새만금지구내 천연가스공급시설 매설에 따른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114.85㎡(영구23.23㎡, 일시91.62㎡)		
최초허가일	2015년 10월 1일		
점 용 기 간	2015년 10월 1일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점용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고시 제2015-130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10. 1

군산시장

주 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성명(법인명)	군산도시가스(주)		
하 천 명 칭	미제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전북 군산시 미룡동 241-12번지외 12필지 군산교도소 도시가스공급시설 매설에 따른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128.35㎡(영구11.85㎡, 일시116.5㎡)		
최 초 허 가 일	2015년 10월 1일		
점 용 기 간	2015년 10월 1일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점용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군산시 고시 제2015-132호

군산 월명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월명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83)와 도시계획과(☎063-454-3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0월 12일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월명 공원	도시 자연	군산시 해망동, 소룡동	2,587,400	-	2,587,400	전북도고시 제585호 (1990.9.11)	

2.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총괄표

시설구분	부 지 면 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건축바닥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87,400.0	-	2,587,400.0	1,215.0	증)16.1	1,231.1	
시설면적총계	57,751.0	증)320	58,071.0	1,215.0	증)16.1	1,231.1	
조경시설	13,667.0	-	13,667.0	-	-	-	
유희시설	115.0	-	115.0	-	-	-	
운동시설	14,417.0	-	14,417.0	-	-	-	
교양시설	21,177.0	-	21,177.0	11,015.0	-	11,015.0	
편익시설	4,988.0	증)320	5,308.0	1,215.0	증)16.1	1,231.1	
관리및기타시설	3,387.0	-	3,387.0	112.0	-	112.0	
기 타	2,529,649.0	감)320	2,529,329.0	-	-	-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조서

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87,400	-	2,587,400	1,215.0	(증)16.1	1,231.1	
시설면적총계		57,751.0	(증)320	58,071.0	1,215.0	(증)16.1	1,231.1	
조경 시설	소계	13,667.0	-	13,667.0	-	-	-	
	조경휴게지	13,667.0	-	13,667.0	-	-	-	9개소
유희 시설	소계	115.0	-	115.0	-	-	-	
	어린이놀이터	115.0	-	115.0	-	-	-	7개소
운동 시설	소계	14,417.0	-	14,417.0	-	-	-	
	테니스장	2,692.0	-	2,692.0	-	-	-	1개소
	체력단련시설	4,495.0	-	4,495.0	-	-	-	3개소
	TRIM코스	4,250.0	-	4,250.0	-	-	-	1개소
	게이트볼장	2,980.0	-	2,980.0	-	-	-	1개소
교양 시설	소계	21,177.0	-	21,177.0	-	-	-	
	수시탑	360.0	-	360.0	-	-	-	1개소
	봉수대	1,265.0	-	1,265.0	-	-	-	1개소
	해병전전기념비	1,150.0	-	1,150.0	-	-	-	1개소
	청소년문화회관	18,402.0	-	18,402.0	-	-	-	1개소
편의 시설	소계	4,988.0	(증)320	5,308.0	1,215.0	(증)16.1	1,231.1	
	화장실	416.0	(증)320	736.0	165.0	(증)16.1	181.1	4개소
	매점	782.0	-	782.0	300.0	-	300.0	7개소
	전망대	2,750.0	-	2,750.0	750.0	-	750.0	1개소
	주차장	1,040.0	-	1,040.0	-	-	-	1개소
관리 및 기타 시설	소계	3,387.0	-	3,387.0	-	-	-	
	광장	647.0	-	647.0	-	-	-	2개소
	관리사무소	400.0	-	400.0	-	-	-	1개소
	생태통로	2,340.0	-	2,340.0	-	-	-	1개소
기타	소계	2,529,649.0	(감)320	2,529,329.0	-	-	-	
	도로	70,421.0	-	70,421.0	-	-	-	
	녹지	2,459,228.0	(감)320	2,458,908.0	-	-	-	

나. 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전체 면적														
시설면적 소계														
조경 시설	1-1	1-1	조경휴게지	해망동 9-3	1,728.0	-	1,728.0	-	-	-	-	-	-	-
	1-2	1-2	조경휴게지	해망동 9-2	1,396.0	-	1,396.0	-	-	-	-	-	-	-
	1-3	1-3	조경휴게지	해망동 9-4	964.0	-	964.0	-	-	-	-	-	-	-
	1-4	1-4	조경휴게지(잔디광장)	월명동 973-18	1,428.0	-	1,428.0	-	-	-	-	-	-	-
	1-5	1-5	조경휴게지(조각전시장)	해망동 998-2	1,143.0	-	1,143.0	-	-	-	-	-	-	-
	1-6	1-6	조경휴게지	송풍동 산17-1	1,094.0	-	1,094.0	-	-	-	-	-	-	-
	1-7	1-7	조경휴게지(조류관찰장)	송풍동 산120	4,186.0	-	4,186.0	-	-	-	-	-	-	-
	1-8	1-8	조경휴게지	송풍동 산16-1	986.0	-	986.0	-	-	-	-	-	-	-
	1-9	1-9	조경휴게지(수변테크)	소룡동 산120	742.0	-	742.0	-	-	-	-	-	-	-
유희 시설	3-1		어린이놀이터	해망동26-84	115.0	-	115.0	-	-	-	-	-	-	-
	소계											-		
	소계													
운동 시설	4-1	4-1	테니스장	해망동 산9-1	2,692.0	-	2,692.0	-	-	-	-	-	-	-
	4-2	4-2	체력단련시설	월명동 산22-4	1,040.0	-	1,040.0	-	-	-	-	-	-	-
	4-3	4-3	체력단련시설	월명동 산22-4외 산22-4외	1,785.0	-	1,785.0	-	-	-	-	-	-	-
	4-4	4-4	TRIM코스	월명동 21-15외	4,250.0	-	4,250.0	-	-	-	-	-	-	-
	4-5	4-5	케이트볼장	소룡동 산127-1	2,980.0	-	2,980.0	-	-	-	-	-	-	-
	4-6	4-6	체력단련시설	나운동 산120	1,670.0	-	1,670.0	-	-	-	-	-	-	-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교양 시설	소 계				21,177.0	-	21,177.0	-	-	-	-	-	-	-
	5-1	5-1	수시탐	해망동 998-2	360.0	-	360.0	-	-	-	-	-	-	-
	5-2	5-2	봉수대	소룡동 산10	1,265.0	-	1,265.0	-	-	-	-	-	-	-
	5-3	5-3	해군전적기념비	해망동 38-2	1,150.0	-	1,150.0	-	-	-	-	-	-	-
	5-4	5-4	청소년문화회관	해망동 95-3	18,402.0	-	18,402.0	-	11.0	-	-	-	-	-
	소 계				4,988	(중)320	5,308	1,215.0	(중)16.1	1,231.1	465.0	(중)16.1	481.1	
	6-1	6-1	화장실	해망동 9-1	96.0	-	96.0	30.0	-	30.0	30.0	-	-	30.0
	6-2	6-2	매점	해망동 9-3	160.0	-	160.0	60.0	-	60.0	60.0	-	-	60.0
	6-3	6-3	매점	해망동 9-5	100.0	-	100.0	50.0	-	50.0	50.0	-	-	50.0
	6-4	6-4	매점	해망동 9-5	120.0	-	120.0	50.0	-	50.0	50.0	-	-	50.0
	6-5	6-5	매점	해망동 9-5	100.0	-	100.0	50.0	-	50.0	50.0	-	-	50.0
	6-6	6-6	화장실	해망동 9-5	100.0	-	100.0	50.0	-	50.0	50.0	-	-	50.0
	6-7	6-7	전망대	해망동 998-12	2,750.0	-	2,750.0	750.0	-	750.0	-	-	-	-
6-8	6-8	매점	해망동 998-2	72.0	-	72.0	40.0	-	40.0	40.0	-	-	40.0	
6-9	6-9	매점	해망동 973-18	130.0	-	130.0	-	-	-	-	-	-	-	
6-10	6-10	매점	해망동 100-27	100.0	-	100.0	50.0	-	50.0	50.0	-	-	50.0	
6-11	6-11	화장실	해망동 998-2	150.0	-	150.0	50.0	-	50.0	50.0	-	-	50.0	
6-12	6-12	주차장	소룡동 산120	1,040.0	-	1,040.0	-	-	-	-	-	-	-	
6-13	6-13	화장실	소룡동 산120	70.0	(중)320	390.0	35.0	(중)16.1	51.1	35.0	(중)16.1	51.1	51.1	
소 계				3,387.0	-	3,387.0	-	-	-	-	-	-	-	
관리 및 기타 시설	7-1	7-1	광장	해망동 100-27	417.0	-	417.0	-	-	-	-	-	-	
	7-2	7-2	광장	해망동 998-2	230.0	-	230.0	-	-	-	-	-	-	
	7-3	7-3	공원관리사무소	소룡동 산120	400.0	-	400.0	112.0	-	112.0	-	-	-	
	7-4	7-4	생태통로	산북동 산166 외	2,340.0	-	2,340.0	-	-	-	-	-	-	

다.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군산시 고시 제2015-13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월명공원:공중화장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월명공원:공중화장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0월 1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산120번지 일원(월명공원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월명공원)사업
 - 명 칭 : 소룡동 월명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390㎡(건축면적 51.1㎡, 건축연면적 5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시장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년 3월 13일
6. 공사설계도서 : 게재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면	동,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군산	소룡	산120	임야	835,751	390	군산시	-			

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재실음생략

9.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계산서 : 게재실음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5-145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1-19호선의외 1개노선) 공사완료 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의외 1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0월 0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04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의외 1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중로1-19호선의외 1개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노선명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완료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 로	계		1,204		314	5,138	
	중로1-19호	20	1,050	20	160	3,284	
	중로3-70호	12	154	12	154	1,85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길3, 2층(수송동)
 - 성 명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윤성필
 -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 성 명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자 김위철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3. 1. 2. ~ 2015. 9. 5.
6. 준공검사일 : 2015. 9. 24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